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22. 2. 8.  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
- 발의자: 박왕규 의원 등 5명(박정환, 정창근, 안대국, 김화덕)
- 발의일자: 2022. 1. 24.(월)
- 회부일자: 2022. 1. 24.(월)
- 상정 및 의결: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2. 2. 8.)

## 2. 제정이유

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올바른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 ~안 제4조)
- 나. 구청장이 부모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)
- 다.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6조)
- 라.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마. 부모교육의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 및 제32조,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2. 1. 24. ~ 2022. 2. 4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부모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주민복지증진 및 건강 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
- 대구광역시 또한 2017년 3월 2일 「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
- 달서구는 2007년 7월 25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대구달서구가족센터를 설립·운영하고 있으며
- 2017년 11월 21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달서가족문화센터를 설립·운영하는 등 정책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가족구조의 변화로 유아양육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1991년 「영유아 보육법」이 제정되고,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음.
- 그러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2,251건으로 2019년 41,389건 대비 2.1% 증가했으며,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5,380건으로 82.1%, 전년대비 11.8% 증가함.
- 최근 자녀 체벌금지와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 확산 등으로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자녀에 대한 기본적 태도, 육아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부모 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